

의안번호	2200130
의 퇴 인	서범수 의원
회 답 일	2024. 6. 7.
추계번호	24F047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80조의3 (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및 이전기 업에 대한 감면)	○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·이전기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신설 - (감면율) 취득세 50% (조례를 통해 최대 50%p 추가 감면 가능) -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간 100%* (조례를 통해 감면종료일 이후 최대 5년간 50% 추가 감면 가능) ※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시 「지방세특별제한법」 제177조의2에 따라 85% 감면 적용 - (적용기한) 2030.12.31.
2	안 제80조의4 (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)	○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- (감면율) 개인지방소득세 3년 100% + 2년 50% - (감면한도) ①, ②를 합산한 금액 ① 시행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5% ② min[사업장 상시근로자 수×100만원, 투자누계액의 2%] - (적용기한) 2030.12.31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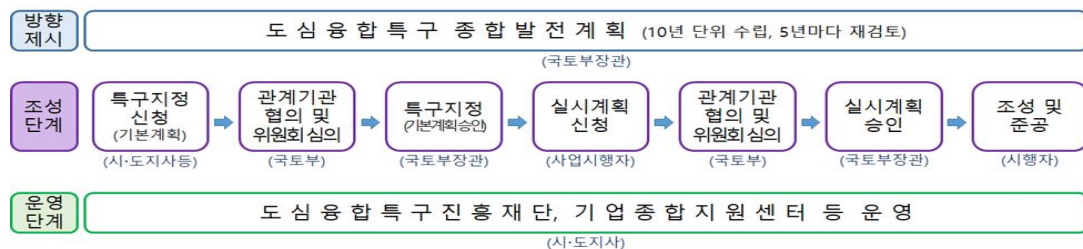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0조의3 (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및 이전기 업에 대한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80조의4 (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 또는 이전기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지방세 감면과 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설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
 -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·주거·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을 의미하며,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(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¹⁾ 제2조, 제4조)
-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도심융합특구 창업·이전기업이 취득할 부동산이나 도심융합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2024년 5월 현재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상태로, 향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정보에 대해 예측할 수 없음
 - －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, 지방 5개 광역시(광주·대구·대전·부산·울산)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,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로 승인신청 시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
 - 참고로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는 다음과 같음
 - － 기본계획 수립(시·도지사등) → 기본계획 승인, 지구 지정(국토교통부장관) → 실시계획 수립(시행자) → 실시계획 승인(국토교통부장관)

[그림 1]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운영 절차

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1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은 2023.10.24. 공포되어, 2024.4.25. 시행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고은비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고은비	02-6788-4839	eunbi15@assembly.go.kr